

의안번호	2201742
의 퇴 인	권칠승의원
회 답 일	2024. 10. 14.
추 계 번호	24D1979

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에 따른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는 경우 재정수입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, 시나리오 1의 경우 4,825억 4,300만원(연평균 965억 900만원), 시나리오 2의 경우 4,965억 700만원(연평균 993억 100만원)으로 추계
- 전자적 방법 및 비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등기기록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추세 유지(시나리오 1): 4,825억 4,300만원
 - 비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등기기록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건수의 50%가 감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만큼 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등기기록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건수 증가(시나리오 2): 4,965억 700만원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수수료 면제액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	2026	2027	2028	2029	2030	합 계	연평균
수수료 면제액	시나리오1	92,344	94,381	96,463	98,590	100,765	482,543	96,509
	시나리오2	95,328	97,266	99,252	101,288	103,373	496,507	99,301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9조제3항 (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)	등기기록의 열람과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이 인터넷,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 수수료 면제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19조제3항(등기사항 의 열람과 증명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등기사항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수수료¹⁾는 인상되지 않는 것으로 가정
- 법원행정처 자료를 바탕으로 개정안에 대한 재정소요를 추계하되, 전자적 방법 및 비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등기기록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추세가 유지되는 것(시나리오 1)과 비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등기기록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건수의 50%가 감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만큼 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등기기록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건수가 증가하는 것(시나리오 2)으로 구분
 - 개정안이 시행되는 경우 비전자적 방법 이용 빈도가 감소하고 수수료가 면제되는 전자적 방법 이용 빈도가 증가할 수 있는데, 본 추계에서는 비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등기기록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건수의 50%가 감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만큼 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발급 건수가 증가한다고 가정

1) 등기사항 열람 및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수수료

(단위: 원)

	등기사항 열람 시	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시
열람 및 교부 수수료	1,200원	1,200원
무인발급기 이용 시 수수료	-	1,000원
인터넷 이용 시 수수료	700원	1,000원

주: 복사물 교부 시 20장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 1장마다 수수료 50원 납부

자료: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(대법원규칙 제3152호)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안 부칙에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, 법안 심의의결 기간 및 예산 확보 등을 고려하여,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등기기록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(안 제19조제3항)

- 개정안에 따라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으로 등기기록 열람과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이 이루어진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고, 이에 따라 재정수입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
- (현황) 2019~2023년 등기기록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 발급건수, 수수료수입액, 수수료단가는 다음의 표와 같음
 - 비전자적 방법을 통한 등기 열람 및 발급 수수료 수입액 연평균 증감률: -3.5%
 - 전자적 방법을 통한 등기 열람 및 발급 수수료 수입액 연평균 증감률: 2.2%

[표 2] 수수료 발급건수, 수입액, 수수료단가 추이: 2019~2023년

		2019	2020	2021	2022	2023	연평균증가율
발급 건수 (A, 개)	비전자적 방법 이용	13,765,405	14,276,737	13,955,698	12,809,405	12,032,442	-3.3%
	전자적 방법 이용	138,850,610	156,505,409	165,428,852	154,481,685	157,663,962	3.2%
	합 계	152,616,015	170,782,146	179,384,550	167,291,090	169,696,404	2.7%
수수료 수입액 (B, 백만원)	비전자적 방법 이용	14,292	14,868	14,501	13,189	12,386	-3.5%
	전자적 방법 이용	79,266	88,683	92,727	85,977	86,494	2.2%
	합 계	93,558	103,551	107,228	99,166	98,880	1.4%
수수료 단가 (C= B/A, 원)	비전자적 방법 이용	1,038	1,041	1,039	1,030	1,029	-0.2%
	전자적 방법 이용	571	567	561	557	549	-1.0%
	합 계	613	606	598	593	583	-1.3%

주: 전자적방법 이용에 따른 수수료수입액에는 「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」 제7조제7항에 따른 인터넷 열람 수수료 면제액이 포함²⁾

자료: 법원행정처 자료를 참고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□ 추계 시나리오는 첫째, 전자적 방법 및 비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등기기록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추세가 유지되는 것(시나리오 1)과 둘째, 비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등기기록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건수의 50%가 감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만큼 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등기기록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건수가 증가하는 것(시나리오 2)으로 구분하여 추계

2) 「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」 제7조(수수료 면제) ⑦제5조의5의 전자신청에 의한 등기사항이 처리완료된 후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당해 등기사항에 대하여 신청하는 제2조제2항의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수수료 또는 제3조제2항의 등기기록 열람수수료를 1회에 한하여 면제한다.

- (시나리오 1) 2023년 기준 수수료 수입액 864억 9,400만원에 2019~2023년 수수료 수입액 연평균 증감률 2.2%를 적용하여 향후 5년간 수수료 면제(수입액)에 따른 재정수입감소액을 추계

[표 3] 시나리오 1: 수수료 면제(수입액) 시 재정수입감소 추정: 2026~2030년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 계
수수료 수입액	92,344	94,381	96,463	98,590	100,765	482,543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- (시나리오 2) 개정안에 따라 등기기록 열람등을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 이용 시 수수료를 면제하는 경우 비전자적 발급 방법의 50% 정도가 전자적 방법으로 변경하여 발급한다고 가정(시나리오 2)하여 향후 5년간 수수료 수입액을 추계

- 이때 발급건수는 [표 2]의 비전자적 발급건수 연평균증가율 -3.3%를 적용하여 추정하고, 수수료 단가는 [표 2]의 전자적 방법 이용 발급단가인 549원(2023년 기준)이 추계기간 동안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

[표 4] 시나리오 2: 수수료 면제(수입액) 시 재정수입감소 추정: 2026~2030년

	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
비전자적 발급	발급건수(A, 개)	10,877,457	10,517,646	10,169,738	9,833,338	9,508,065	
	전자적발급으로 변경 (B=A×50%, 개)	5,438,728	5,258,823	5,084,869	4,916,669	4,754,033	
	수수료 단가 (C, 원)	549	549	549	549	549	
	소요비용 (D=B×C, 백만원)	2,984	2,885	2,790	2,697	2,608	13,964
전자적발급에 따른 수수료 수입액(E, 백만원)		92,344	94,381	96,463	98,590	100,765	482,543
합계(D+E, 백만원)		95,328	97,266	99,252	101,288	103,373	496,507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☐ 없음

V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여은구	김안나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여은구	02-6788-4673	cecil@assembly.go.kr